

고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 번호 | 115 |
|----------|-----|

제출년월일 : 2009. 3 . 3 .

제 출 자 : 고성군수

1. 개정이유

-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한 위원수의 상한을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는 등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(보건복지가족부령 제73호, 2008.11.5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위원수의 상한선을 확대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수를 조정함 (안 제9조제3항, 제4항)
 - 10명 이상 20명 이하 ⇒ 10명 이상 30명 이하
- 나.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유급간사를 둘 수 있도록 함(안 제9조)
- 다. 자연스럽지 아니한 표현을 알기 쉬운 문맥으로 바꿈

3. 참고사항

- 가. 입법예고
 - 고성군 공고 제2009-39호(2009. 01. 06 ~ 2009. 01. 28)
 - 의견제출사항 : 없음
- 나. 관련법령 및 근거
 -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
 -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및 제1조의4
- 다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- 라.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4. 본 문

- 덧붙임과 같음

고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7조의2,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1조의3 및 제1조의4에 따른 고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제3항 후단 중 “두며 기능은 【별표2】와 같다.”를 “둔다”로 한다.

제2조(기능) ① 고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(이하 “대표협의체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 또는 건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.

1.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·시행·평가에 관한 사항
2.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 등의 연계·협력에 필요한 사항
3.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,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
4. 군수가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5.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

제3조제1항과 제4항 중 “10인 이상 20인”을 “10명 이상 30명”으로 하고, 제2항과 제5항 중 “각호의1에”를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하며, 제2항 중 “군수, 주민생활과장”을 “부군수, 주민생활과장”으로 하고, 제3항 중 “각1인”을 각 1명으로 한다.

제4조 중 “제3조제2항 내지 제3조제5항에”를 “제3조제2항부터 제2조제5항까지에”로 한다.

제6조 중 “잔여기간”을 “남은 기간”으로 한다.

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조(간사)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둔다.

이 경우 대표협의체에 상근의 유급간사를 둘 수 있으며, 대표협의체의 유급간사는 실무협의체의 간사를 겸임한다.

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·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.

제14조 중 “예산의 범위 내에서”를 “예산의 범위 안에서”로 한다.

별표 1과 별표 2를 삭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|
| <p>제3조(구성) ①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<u>10인 이상 20인</u>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제2항 <u>각 호의1에</u>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, <u>군수, 주민생활과장</u>, 보건소장, 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.</p> <p>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, 임명직위원(당연직위원을 포함한다)과 위촉직 위원 <u>각1인</u>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.</p> <p>④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<u>10인 이상 20인</u>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⑤실무협의체의 위원은 「동법 시행규칙」 제1조의4제2항 <u>각호의 1에</u>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, 총괄지원담당주사, 보건행정담당주사는 당연직위원으로 한다.</p> <p>⑥ (생략)</p> 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0명 이상 30명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각 호의 어느 하나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군수, 주민생활과장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각 1명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0명 이상 30명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각 호의 어느 하나</u></p> <p>⑥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3조제2항부터 제2조제5항까지에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남은 기간</u></p> |
| <p>제4조(위원명단 공개)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<u>제3조제2항 내지 제3조제5항에</u> 의한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은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</p> | |
| <p>제6조(위원의 임기)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<u>잔여기간</u>으로 한다.</p> | |

신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-|
| <p>제8조(간사)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. 이 경우 주민생활과 소속공무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.</p> <p>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(실무위원장 포함)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·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.</p> <p>제14조(회의수당) 각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·전문가·관계인 등에게는 「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| <p>제8조(간사)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둔다. 이 경우 대표협의체에 상근의 유급간사를 둘 수 있으며, 대표협의체의 유급간사는 실무 협의체의 간사를 겸임한다.</p> <p>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·작성하는 등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.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예산의</p> <p>범위 안에서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|

신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|
| <p>【별표1】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주요 세부 기능(제2조제1항 관련)</p> <p>1.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심의·건의 하거나 자문에 응함</p> <p>가. 관할지역 안의 사회복지사업의 중요사항</p> <p>(1) 중요사항: 군수가 관할지역 안의 지역사회복지와 관련, 지역복지시책으로 추진 하고 있는 사항으로 실무협의체로부터 안전으로 상정된 제반사항</p> <p>나. 다음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·변경·시행·평가에 관한 사항</p> <p>(1) 지역사회복지계획 내용에 관한 사항</p> <p>(가) 복지수요의 측정 및 전망에 관한 사항</p> <p>(나)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에 대한 장·단기 공급 대책에 관한 사항</p> <p>(다) 인력·조직 및 재정 등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</p> <p>(라)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사항</p> <p>(마)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·제공 방안에 관한 사항</p> <p>(바) 지역사회복지 관련 통계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항</p> <p>(사) 지역사회복지계획 추진과정에 대한 주민참여촉진에 관한 사항</p> <p>(2)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절차 등에 관한 사항</p> <p>(가) 지역주민의 복지욕구·복지기관·단체 복지자원 조사에 관한 사항</p> <p>(나) 지역주민,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기관·단체, 전문가의 의견수렴 사항</p> <p>(다) 지역사회복지계획 추진과정에 있어 주민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</p> <p>(3) 기타 지역사회 특성상 계획수립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</p> <p>(4) 그 밖에 지역사회복지계획 관련, 실무분과로부터 실무협의체를 거쳐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</p> <p>2. 다음 각 호의 사회복지-보건의료서비스 연계·협력 강화</p> <p>가.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 연계의 세부지침에 관한 사항</p> <p>나. 지역사회복지계획과 지역보건의료계획간 연계·협력에 관한 사항</p> <p>다.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</p> <p>(1)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 검토·보호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</p> <p>(2) 기타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 관련, 실무분과로부터 실무협의체를 거쳐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</p> <p>3. 그 밖의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 또는 협의체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</p> 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삭 제></u></p> |

신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|
| <p>【별표 2】 실무협의체의 주요 세부 기능(제2조제3항 관련)</p> <p>1.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무협의하여 대표협의체 업무 수행을 지원함</p> <p>가. 관할지역 안의 사회복지사업의 중요사항 (1) 중요사항: 대표협의체에서 심의할 사항과 동일</p> <p>나.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·변경·시행·평가에 관한 사항 (1) 지역복지계획 내용에 관한 사항 (가) 복지수요의 측정 및 전망에 관한 사항 (나)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에 대한 장단기 공급대책에 관한 사항 (다) 인력·조직 및 재정 등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(라)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(마)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제공방안에 관한 사항 (바) 지역사회복지 관련 통계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항 (사) 지역복지계획 추진과정에 대한 주민참여촉진에 관한 사항 (2)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절차 등에 관한 사항 (가) 지역주민의 복지욕구·복지기관·단체 복지자원 조사에 관한 사항 (나) 지역주민,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기관·단체, 전문가의 의견수렴 사항 (다) 지역복지계획 추진과정에 있어 주민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 (3) 그 밖에 지역사회복지계획 관련, 실무분과로부터 실무협의를 요구하는 사항 (4) 기타 군수 또는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지역사회 특성상 계획수립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</p> <p>다.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 연계·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(1)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 연계의 세부지침에 관한 사항 (2) 지역복지계획과 지역보건의료계획간 연계·협력에 관한 사항</p> <p>라.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(1)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 검토·보호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(2) 기타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 관련, 실무분과로부터 실무협의를 요구하는 사항</p> <p>마. 가~라 항목에 관한 실무분과간 연계 및 조정 바. 가~라 항목에 관한 협의체에 심의·건의할 사항 검토 및 안전 상정 (1) 별도의 실무분과를 구성한 경우 사전 실무분과에서 분야별 안전의 검토 실시 사. 그 밖의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</p> 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삭 제></u></p> |